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2231 판결 [건물명도]

전 문

원 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소송대리인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1)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71㎡ 중도매인 점포, 2)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 냉동창고,3)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6.67㎡ 냉동창고를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66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2) 2023. 5.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25,9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을 시설사용보증금 1,596,000원, 월 시설사용료 74,36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용기간 202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나)부분을 시설사용보증금 1,602,000원, 월 시설사용료 218,13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용기간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다)부분을 시설사용보증금 3,745,800원, 월 시설사용료 233,42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용기간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사용계약(이하 위 각 시설사용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리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의 시설사용료와 관리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로부터 2023년 4월분 시설사용료, 관리비와 가산금 합계 669,3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3. 3. 9. 피고 주식회사의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이 있자, 피고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계약 제17조에 의하여 2023. 3. 21.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 제1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2023. 3. 21.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부분, (나)부분과 (다)부분을 각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시설사용료, 관리비와 가산금 합계

669,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3. 5.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25,910원(= 74,360원 + 218,130원 + 233,420원)의 비율에 의한 시설사용료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별지